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258

제출년월일: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특수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여 국제도시 분야 고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'국제도시과학대학원'을 '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'으로 변경하고, 특수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의2(대학원의 종류)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4. 9. 12. ~ 10. 2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 · 구조문 대비표: 붙임
- ※ 작성자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한문기(☎ 2133-6739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 중 "법학전문대학원"을 "법학전문대학원,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국제도시과학대학원, 도시보건대학원"을 "도시보건대학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대학원) 법 제29조의2에 따	제5조(대학원)
라 다음과 같이 대학원을 두며,	
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	
학원 학칙으로 정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	2
전문대학원으로 세무전문대학	
원, 디자인전문대학원, <u>법학전</u>	<u>법학전</u>
문대학원	문대학원, 국제도시과학전문
	대학원
3. 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의	3
특수대학원으로 도시과학대학	
원, 경영대학원, 과학기술대학	
원, 교육대학원, <u>국제도시과학</u>	도시보건대학
대학원, 도시보건대학원	<u>원</u>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국제도시과학 전문대학원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 용 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행정6급 한문기(☎ 2133-6739)